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10 ~ 17

제출연월일	2010. 4. 5.
제 출 자	거창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위원회의 설치근거가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조례로 정하고 있는 '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'에 대하여 그 존속기한을 조례에 신설하여 명시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「지방자치법」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같은 법 시행령 개정(대통령령 제21680호, 2009.8.13개정, 시행 2009.10.2)으로 개별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한 경우와 같이 "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"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기관의 존속기한을 5년의 범위 내로 정하여 조례에 명시하도록 신설 규정함에 따라, 법령에 따른 위임사무가 아닌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이 조례로 규율함에 있어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따른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함 (안 제7조의2 신설).

○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함
(조례 제정·시행일(2009.12.30)부터 5년간)

나. 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고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게 하려는 경우로서 연임에 관한 별도 규정은 두지 않고,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순화함(안 제8조제4항).

○ 연임규정 삭제

○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

○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80조, 제80조의2, 제80조의3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　　의 : 기획감사실(법무통계담당)

라. 그 밖에

(1)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(2) 입법예고 : 생략

(3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거창군 조례 제　　호

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.

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	제3장 사이버군민제도운영위원회
제7조(설치 및 기능) (생 략)	제7조(설치 및 기능)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7조의2(위원회의 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14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.
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~ ③ (생 략)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	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